

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(최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4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,
김은영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폐지이유

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‘리개발위원회’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,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함

3. 조례(안) : “붙임”

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